

결제방법 및 신용장

- 제 1 절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 제 2 절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 제3절 화환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입
- 제 4 절 포페이팅(Forfaiting) 방식에 의한 수출입
- 제5절 팩토링(Factoring)방식에 의한 수출입
- 제6절 보증신용장
- 제7절 무역보험제도
- 제8절 수출입대금 결제방법과 외국환거래법
- 제 9 절 환율 및 환위험 관리방안

제1절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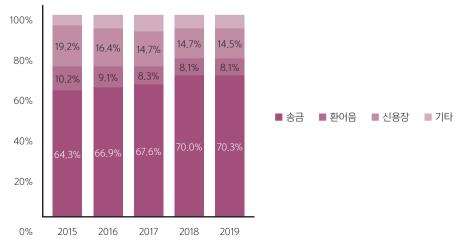
1. 개요

송금방식은 무역거래 당사자간의 약정(계약)에 의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주로 전신환(T/T, Telegraphic Transfer)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서 아래와 같은 3가지 특징이 있다.

송금거래방식의 특징

- ① 송금방식은 신용장방식(UCP), 추심방식(URC)과는 달리 국제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서가 근거가 되므로 계약서 작성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 ② 대금결제와 선적서류/물품의 인수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대금은 은행을 통해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송금하지만 관련 서류(인보이스, 선하증권 등)는 수출자 자신의 책임 하에 수입자에게 직접 송부하여야 한다.
- ③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환어음을 사용하는 결제방식은 기본적으로 추심과 신용장 결제방식이다.
- ④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환어음을 사용하는 결제방식은 송금시기에 따라 위험부담자가 달라진다. 사전송금의 경우 수출자는 신용위험이 없고 수입자는 물품을 인수하여 확인할 때까지 상업위험이 존재한다. 사후송금은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물품을 인수하고 정해진 기일에 대금을 송금하므로 상업위험이 없고 수출자는 대금을 영수할 때까지 신용위험이 존재한다. 사전송금과 사후송금의 구분은 선적일(Date of shipment)을 기준으로 한다.
- ※ 현재 수출에서 결제방식의 비중은 중견기업 이상의 무역업체들이 해외 유통망을 구축함으로써 대금회수 위험(신용위험)이 낮아지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위험관리방안(사후송금의 경우 수출보험 가입)을 활용함에 따라 송금결제방식의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반해 은행 수수료가 송금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복잡한 신용장 결제는 감소하고 있다.

결제조건 비중 추이('15~'19년)



수출결제방식 변화요인 (신용장 ⇒ 송금)



2. 사전송금방식 (Advance Remittance)

수출대금 전액을 수출물품의 선적전 정해진 기일 이내에 미리 송금받는 방식이다. 수출대금을 미리 받고 물품의 선적은 추후에 하게 되므로 사전송금방식은 수출자에게 유리하다.



(1) 사전송금 방식 수출의 유의사항

- ①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계약건당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 (사례) 질문 : 본지사간에 10만 달러의 계약 건에 대한 결제 조건을 30% 사전 송금, 70% 사후 송금을 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 신고해야 할까요?
 - 답 : 동 규정은 계약건당 5만 달러 초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송금이 3만 달러 이더라도 계약금액이 10만 달러이므로 신고해야 함.

- ②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계약건당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전 1년을 초과하여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단,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산업설비, 중화학공업제품, 기계류는 제외)
- ③ 사전 송금 방식으로서 건당 5만불을 초과하여 영수한 경우 동대금을 반환하거나 대응수출을 이행해야 한다.
- ④ 사전송금방식 수출물품 조달시에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으나, 구매확인서는 발급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공급자에게는 수출실적 인정이 가능하다.
- ⑤ 전신환이 아닌 송금수표로 송금 받는 경우는 특히 위험하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송금수표는 수출자가 거래은행에 수표 추심을 의뢰하여 수표대금을 받고 선적한 이후에도 수입자가 수표 발행은행에 분실 또는 도난신고를 해서 부도를 내면 수출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에 수표 추심 대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상태가 매우 우량한 수입자와의 거래 이외에는 송금수표를 받는 거래는 삼가고 외국환은행을 통한 전신환으로 대금을 영수하도록 한다.

외국화거래규정 제 5-8조

- ① 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의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 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 본문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다.
- 1.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가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또는 외상수출채권매입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나.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다.본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전 송금 방식 수입

사전송금방식 수입은 선적서류 인수전에 주로 전신환(T/T)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수입하는 거래로서 이방식은주로소액거래, 단발성거래 또는 최초거래에 많이 활용된다. 최초거래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서 수출자를 신용조회하여 신용상태를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하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신용장 결제 또는 별도의 위험관리를 한 후에 거래를 하도록 한다.

☞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

계약건당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다만 선박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500만불이내의 수입대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2항)

☞ 대응수입 이행의무

사전송금방식 수입으로 건당 2만불을 초과하여 수입대금을 지급한 경우, 동대금을 반환받거나 대응수입을 이행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5-9조 대응수출입 이행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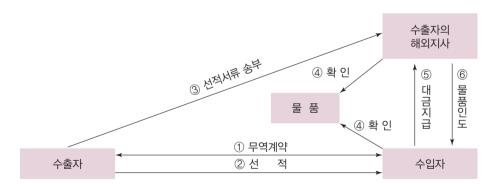
※ 외화거래 심사업무 한국은행 담당부서 및 연락처: 외화업무부 외화심사팀 본부 (02-759-5300)

3. 대금교환도 조건(COD, CAD)

- ① 물품 또는 선적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수출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받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송금결제방식의 동시결제방식이지만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선적을 진행한 후에 송금을 받으므로 사후송금방식으로 구분된다.
- ② 대금교환의 대상에 따라 현물상환방식(COD, Cash On Delivery)과 서류상환방식(CAD, Cash Against Documents)으로 구분된다. 대금교환도조건 거래는 러시아, 베트남, 중국 등 신용장개설 및 환결제에 어려움이 있는 공산권 지역 그리고 환어음의 과다한 인지세로 인하여 대금결제시 환어음의 사용을 꺼리는 유럽지역과 거래할 때 많이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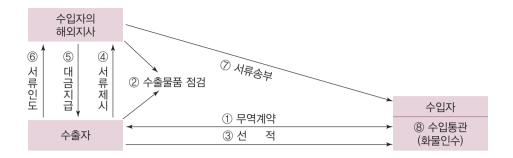
(1) 현물상환방식(COD: Cash On Delivery)

수입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수출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수출자가 물품을 지사 등에 송부하면(B/L상 Consignee가 수출자 지사 등의 지시식으로 기재됨) 수입자가 물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후 물품과 현금을 상환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의 거래. 주로 귀금속 등 고가품으로서 직접 물품을 검사하기 전에는 품질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많이 활용한다.



(2) 서류상환방식(CAD: Cash Against Documents)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자의 대리인이나 지사에게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 통상 수입자의 지사나 대리인 등이 수출국내에서 물품의 제조과정을 점검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전검사를 행하며, 대리인 등이 없는 경우 은행을 활용하기도 한다(유럽식 D/P거래).



☞ CAD와 D/P의 차이점

- ① CAD방식 거래시 선적서류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부하면 형식적으로 D/P방식과 유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를 유럽식 D/P방식이라고도 한다.
- ② 두 거래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대금결제 시 환어음을 발행하는지 여부에 있다. D/P거래는 어음결제 방식으로서 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의거 환어음을 추심하여 대금을 영수하고, CAD거래는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는 송금방식으로서 수입자는 수출자가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리인 등을 매개로하여 직접 송부한 선적서류를 받은 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데 CAD 방식이지만 은행을 통해 선적서류(환어음 사용 안함) 등을 보내는 방식을 유럽식 D/P라고 한다.

4. 사후 송금방식

물품의 인도(선적)후에 주로 전신환(T/T)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수출입 거래이다.

- ①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 보편화된 결제방식으로 사전송금방식과는 정반대로 수출상이 물품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먼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송부하고, 계약에 따라 수입상이 사후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 ② 매매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수출상이 선적을 이행한 후 수입상에게 선적서류를 송부하면 통상 선적일 기준으로 계약에서 정한 일정기간(통상적으로 30일에서 180일)이 경과한 후에 수입상이 수출상의 은행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한다.

〈계약서상 문구〉

Buyer shall remit by wire transfer within 30 days after the date of B/L issuance.(or after the date of shipment) Buyer shall remit by wire transfer within 60 days after the date of arrival of goods at buyer's warehouse. Buyer shall remit the proceeds by T/T with in 10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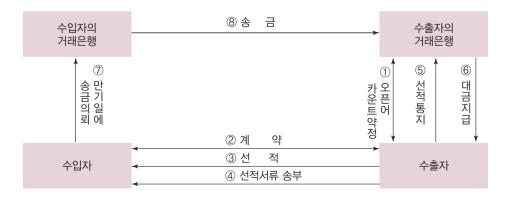


5. Open account 방식

Open Account 방식은 사후송금방식과 유사하나 수출자가 거래은행과 수출채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약정한 채권은행으로 입금할 것을 승낙받아서 거래하는 결제방식이다. 수출자는 수출선적 후에 수입자에 대한 수출채권을 약정은행에 매각(O/A Nego)하고 약정은행은 만기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게 되므로 주로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간 거래나 본지사간 거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O/A 결제방식은 수출업체가 선적을 완료하고 수입자에게 선적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채권이 발생한다는 의미로서 "선적통지조건부 사후송금 결제방식"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Open Account 수출채권 매입(O/A Nego)을 수출자에 대한 여신행위로 보므로 상기에서 언급하였듯이 수출자는 거래은행과 O/A Nego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승낙을 받은 후에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만약 수출자가 O/A Nego를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사후송금과 다르지 않다.

본·지사 간 또는 고정 거래처 간에 지속적으로 수출입거래를 하는 경우 O/A결제방식을 한건에 그치지 않고 3개월, 6개월 등 미리 약정한 결산시기에 채권·채무를 상계한 후 차액만을 결제하는 상호계산방식으로 결제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호계산으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상호계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1. 개요

추심결제방식은 무신용장 결제방식 중의 한 가지로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물품대금에 대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을 통하여 추심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거래방식이다. 추심결제방식에서 수출자는 환어음을 발행해야 하며 또한 은행을 통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해야 한다. 수입자 은행인 추심은행은 대금지급을 약속하지 않고 단순히 어음을 추심하는 업무만 수행한다. 추심결제 방식의 거래에는 환어음의 만기일 기재방식에 따라 지급인도(D/P)조건 인수인도(D/A)조건이 있다.

(1) 지급인도 조건(D/P: Documents against Pa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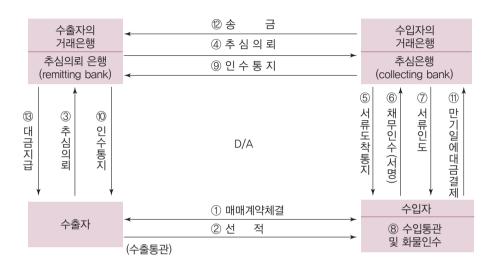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일람불(At Sight)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 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은행(추심의뢰은행) 은 추심관련 서류를 수입지의 은행에 발송하여 추심요청을 하게 된다. 추심을 요청을 받은 추심은행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어음지급인(수입자)이 환어음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이다.

※ 기한부 D/P: 기한부 D/P 결제방식은 서류도착 즉시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추심관련 서류를 인도하면서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명시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입자에게 수입대금을 받고 서류를 인도해주는 D/P거래의 한 형태이다(예: D/P 30days). 이는 운송구간이 장거리인 경우에 서류가 물품보다 일찍 도착하여 물품이 도착할 때까지 수입자의 결제를 연장해줌으로써 자금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D/P의 변형이다



(2) 인수인도 조건(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수출자가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은행을 통해서 수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자는 어음상에 어음인수행위(Acceptance)를 해서 환어음을 인수한다. 그러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추심은행은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지급인(수입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서 추심의뢰은행에 송급하면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이다



☞ D/P, D/A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① 수입자의 신용조사 철저

D/P, D/A거래는 은행이 단순히 서류전달자에 불과하므로 대금지급을 확약하지 않는다. 즉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거래형태이므로 수입자의 신용을 철저히 조사해야하다

- ※신용조사 의뢰
- 한국무역보험공사(1588-3884)
- KOTRA(1600-7119)
- NICE D & B(02-2122-2515)
- ② 손실방지대책 마련
 - 수출보험 가입(한국무역보험공사)
 - 수입자에게 담보제공 요구 : Standby L/C 개설, 계약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등
 - 수입자 거래은행의 지급보증서(Bank Guarantee) 요구 등

☞ 추심결제방식의 유의사항

수출입결제는 신용장방식뿐 아니라 추심결제방식, 사후송금방식, 선수금영수방식 등 결제방식이 자유화되어 있다

다만 국내기업의 본지사간 인수인도조건(D/A)에 의한 수출로서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 일람 후 3年을 초과해서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제에게 신고해야 한다.

2. URC 522의 주요내용

추심결제는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화환어음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 of the Commercial Paper; URC)에 따라서 관련 은행들이 절차를 진행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URC 522'는 1995년도에 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1) 은행을 통한 선적서류의 송부

수출자는 선적 후 이 규칙에서 정한 선적서류 및 금융서류(환어음)를 서류송부은행 또는 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에 제출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수입지에 있는 추심은행(Collecting Bank)으로 서류를 우송하여야 한다. 수출자가 환어음에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는 운송서류, 보험서류(가격조건이 CIF, CIP일 경우),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기타서류 등이 있다.

(2) 은행을 통한 대금의 추심

추심은행은 거래조건이 D/P인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수입대금을 받고 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D/A인 경우에는 수입자가 만기에 어음대금을 정히 지급하겠다는 요식행위인 환어음 인수행위를 하면 관련 서류를 넘겨준다. 수입상이 수입대금을 직접 수출상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반드시 추심은행에 지불해야 한다. 추심은행이 수입상에게 받은 물품대금을 서류송부은행으로 보내면 서류송부은행이 이 대금을 수출상에게 전달한다.

(3) 어음부 거래

수출상이 대금을 결제받기 위해 환어음을 발행한다는 점이 송금방식과의 근본적인 차이이다.

〈매매계약〉

D/P, D/A거래에 있어서는 신용장방식과는 달리 거래당사자간의 신용에 의거하여 때문에 계약 시에는 상대방의 신용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계약서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추심의뢰 및 추심전 매입(Bill Purchased)〉

수출자로부터 추심의뢰 요청을 받은 추심의뢰은행(수출자 거래은행)은 어음, 선적서류를 추심은행(

수입자 거래은행)에 송달하여 추심해 줄 것을 요청한다.

D/P 또는 D/A 거래방식은 사후지급방식이므로 수출대금이 일정기간 경과한 이후 또는 만기일이 되어야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전 매입을 신청하여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추심의뢰은행이 미리 수출대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추심전 매입은 추심의뢰은행의 수출자에 대한 여신이므로 추심의뢰은행은 일반적으로 대금회수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채권확보 절차를 취한 후 추심전 매입에 응하게 된다.

〈선적서류 도착통지서의 접수〉

어음 및 선적서류가 추심은행에 도착, 접수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서류도착통지서(Arrival Notice)를 발송하여 어음의 지급 또는 인수를 촉구하게 된다.

〈어음인수, 결제 및 선적서류 인도〉

선적서류 도착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D/P의 경우에는 어음대금을 결제하여야 하고, D/A의 경우에는 추심은행에 가서 어음을 인수하여야 한다.

어음의 인수 또는 결제를 필한 수입자는 선적서류를 인도받아 통관절차를 거쳐 화물을 인수하게 되며 추심은행은 수입자로부터 수입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고 수출자가 추심 의뢰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면 D/P. D/A거래는 종료된다.

3. 사고어음(부도어음)의 처리

사고어음(부도어음)이란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수입자가 인수 또는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수입자가 수입대금 지급기일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수 또는 대금지급 지연을 신청해 오는 경우 추심은행은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받아 추심의뢰은행에 통보하고 처리방침을 지시받아야 한다.

수입자가 추심서류 도착일로부터 일정기일 내에 서류를 인수하지 않거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수거절통지서 또는 지급거절통지서를 작성하여 즉시 추심의뢰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신용장과의 차이점

(1) 수입대금의 지급책임자

신용장 거래에서 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므로 개설은행은 대금지급에 대한 법적책임을 부담한다.

추심결제에서는 채무자가 수입자이므로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추심은행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추심은행은 그 사실만 수출상에게 통보하면 되지 그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국제규범

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이 적용되지만 추심 거래는 화환어음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URC 522)이 적용된다.

(3) 화물의 소유권과 관련한 법적의미

신용장 거래는 신용장 개설시점부터 외환거래약정상의 약정에 따라 지급확약의 대가로 수입화물이 개설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되기 때문에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를 하지 않으면 개설은행이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다.

추심거래는 수입자가 추심대금을 결제하기 전까지는 화물의 소유권이 수출자에게 남아 있다. 수입자가 대금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추심은행은 서류를 추심의뢰은행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추심은행은 추심업무의 수임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4)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

신용장거래의 경우 수출자, 수입자가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이 추심거래보다 훨씬 다양하고 더 많다.

(5) 서류심사 의무

신용장의 경우 은행은 수출자가 제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서류심사)하여야 하지만, 추심에서는 은행이 지급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므로 서류의 내용 심사를 할의무가 없다. 추심의뢰은행은 수출상으로부터 서류를 받으면 서류목록이 추심의뢰서에 기재된 목록과일치되는지 여부만 점검하고 서류의 내용은 심사하지 않는다.

(6) 환어음상의 지급인(draw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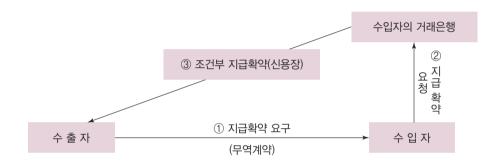
신용장상에서 수출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상의 지급인은 반드시 은행(개설은행, 상환은행, 지정은행)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추심에서는 지급인이 수입자로 표기된다.

제3절

화환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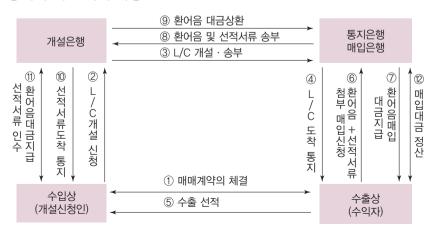
1. 개요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란 무역거래에서의 대금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서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자는 신용장 상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자가 아니라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Issuing Bank's conditional undertaking)이다.



세계무역시장이 점차 구매자 위주 시장으로 변화하고, 송금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비싸고 복잡한 신용장 거래는 점차 그 사용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수출입거래에서 신용장 결제비중은 약 9.8%로, 송금방식에 비해서 그 비중이 매우 낮다. 그러나 아직도 전체 결제비중에서 10% 정도를 신용장결제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신용장 결제의 장점이 필요한 거래에서는 동 결제방식이 선택되고 있다.

2. 신용장 방식에 의한 거래 과정



- ① 수입자와 수출자는 결제방식을 신용장결제방식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② 수입자는 매매계약상의 대금결제를 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게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신청한다
 - 신용장에서 수입자는 신용장 개설신청인 또는 개설의뢰인(Applicant)이고, 수출자는 수익자 (Beneficiary)가 된다.
- ③ 개설의뢰인의 거래 은행은 의뢰인의 신청에 따라서 신용장을 개설하여 이를 수출국의 거래은행 (또는 수출자의 거래은행)에게 송부하고 수익자에게 통지해주도록 지시한다.
- ④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의 거래은행(또는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라서 수익자에게 신용장 도착사실을 통지해준다. 이로써 그 은행은 통지은행(Advising Bank)이 되다.
- ⑤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은 수익자는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을 믿고 안심하고 계약물품의 선적을 진행하고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인수 또는 선적 증거로서 운송서류(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등)를 받는다
- ⑥ 수익자는 신용장상에 요구하는 서류들(Documents required)을 모두 구비하고 환어음(bill of exchange)과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스스로 발행하여 수출국내의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Negotiation)을 하다
- ⑦ 매입신청을 받은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운송서류, 상업송장 등의 부속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심사하여 일치하는 제시가 되면 매입하고 수익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다. 이로써 그 은행은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이 된다.
 - 동시에 수익자는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되며, 매입은행은 개설은행 대신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다.(이 순간부터 개설은행은 채무자, 매입은행은 채권자가 된다)
 - 위의 6과 7을 통한 수익자의 수출대금회수를 NEGO(Negotiation, 매입)라고 한다. 매입은행은 통지은행이 겸하는 경우가 많으나 서로 다른 은행으로 이행하는 경우도 있다.
- ⑧ 매입은행은 수익자로부터 매입한 환어음과 부속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한다.
- ⑨ 개설은행은 신용장과 서류가 일치하는지 심사를 하고 일치하는 제시가 된 경우 매입은행에 신용장대금을 상환한다.
- ⑩ 개설은행은 서류도착 사실을 개설의뢰인에게 통지한다.
- ① 개설의뢰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운송서류를 비롯한 서류들을 인도받아서 수입통관 진행 및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한다.
- ②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매입은행은 환가료 등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정산하고 대금이 예정보다 늦게 송금된 경우에는 지연이자(Delay charge), 매입대금보다 적은 금액이 송금된 경우에는 less charge를 수익자에게 징구하여 정산하다.

3. 신용장의 당사자

기준 및 종류	내용
개설의뢰인 (Applicant)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는 자로서 보는 각도 및 기능에 따라 Importer, Accountee(대금 결제인), Drawee(환어음 지급인), Consignee(수하인), Buyer(매수인)라고도 한다.
개 설 은 행 (Issuing Bank)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 지급 확약하는 은행을 말하며 Opening Bank 라고도 한다.
통지은행 (Advising Bank)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수출상에게 통지하는 은행을 말하며 Notifying Bank라고도 한다. 통상 개설은행의 본, 지점, 환거래 약정(Correspondent Agreement)이 체결된 은행 중 수출자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통지한다.
확 인 은 행 (Confirming Bank)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에 제2차 지급확약을 하는 은행으로서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을 개설은행과 「동일」하게 지급 또는 인수하겠다는 확약을 한 은행을 확인은행이라 한다. 특히 외환사정이 좋지 않은 국가나 신용도가 낮은 후진국의 개설은행과 거래할 때에는 확인 은행을 지정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 익 자 (Beneficiary)	신용장을 수취하는 수출업자로서 보는 각도 및 기능에 따라 Exporter, Seller, Drawer(어음 발행인), Consignor(송화인), Shipper(화주)라고도 한다.
매 입은 행 (Negotiating Bank)	신용장조건에 의거 수출상이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 이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수출지의 은행. 매입이란 은행의 「상행위」로서 수익자의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수리하고 신용장 금액에서 환가료와 수수료를 공제한 가액을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양도은행 (Transferring Bank)	양도가능신용장의 원수익자(First beneficiary)의 요청에 따라 제3자(Second beneficiary)에게 신용장을 양도하는 은행을 말한다. 신용장에 매입, 지급, 인수 등의 명칭이 표기된 경우에는 이 은행이 양도은행이 되며, 자유매입신용장인 경우에는 특정은행을 양도은행으로 지정한 후 이 은행을 통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지급은행 (Paying Bank)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될 때 대금지급을 이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신용장 개설은행이나,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신용장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 또는 제3국의 결제은행 (Settlement Bank) 등이 된다.
인 수 은 행 (Accepting Bank)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조건이 기한부어음일 경우에는 수출지에서 선적서류를 수령하는 지정은행이 지급에 앞서 인수(수출상이 제시하는 환어음의 뒷면에 만기가 되면 우리 은행이 지급 책임을 진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를 하게 되며 이러한 의사표시를 한 은행을 인수은행이라 하며 어음의 만기에 대금지급의 책임을 부담한다.
상 환 은 행 (Reimbursing Bank)	매입은행이 개설은행과 예치환거래은행이 아닌 경우(Non depositary correspondent bank)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신용장대금을 입금할 방법이 없으므로 자행과 예치환거래관계 (Depositary correspondent bank)에 있는 제3의 은행을 지정하여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이은행 앞으로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을 송부하라고 지시하게 된다. 개설은행으로부터 미리 상환수권(Reimbursement Authorization)을 받아 놓은 제3의 은행은 매입은행의 상환청구가 있으면 그 즉시 상환은행에 예치된 개설은행의 구좌에서 상환요청금액을 인출하여 매입은행구좌로 입금시켜주는 바이러한 행위를 하는 은행을 상환은행이라 하며, 일명 결제은행 (Settling Bank)이라고도 한다.

4. 신용장의 특성

(1) 독립성의 원칙(Principle of Independence)

UCP 600 제4조에서 신용장은 그 성질상 그것이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근거를 두고 발행된 것이기는 하지만 신용장은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이며,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관한 어떠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또한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관련 은행은 매매계약서를 보지 않고 신용장만을 독립적으로 본다. 따라서 신용장에 기재된 수익자의 주소, 상품명 등이 계약서와 다르더라도 계약서와 일치하게 신용장의 내용을 조건변경 하지 않는 한 수익자는 신용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추상성의 원칙(Principle of Abstraction)

UCP 600 제5조에서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은 서류에 의해 거래를 하는 것(deal with documents) 이지 그 서류와 관련된 상품, 용역 또는 기타 계약이행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에 관한 사항도 문서(품질증명서, 선적전 검사증명서 등)로서 요구해야 하며, 품질 등에 관한 문제는 수출입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든지 혹은 수입자가 별도의 클레임(claim)을 제기하여 상사분쟁조정에 의해 해결하여야 한다. 서류에 의한 신용장의 거래관행을 추상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3) 신용장거래의 한계성(Limitation)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성은 은행이 안심하고 신용장 거래에 개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나, 실물거래인 무역거래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는 한계성을 동시에 지니게 된다. 즉,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신용장이 물품의 품질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으며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물품을 공급하였더라도 서류상의 하자로 인한 대금결제의 지연 또는 지급 거절을 막을 수는 없다

5. 신용장통일 규칙(UCP)

(1) 신용장통일규칙이란 무엇인가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은 신용장업무취급시 준수사항 및 해석기준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으로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3년에 제정하여 2007년에 이르기까지 6차에 걸쳐서 개정되었는데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제6차신용장통일규칙(UCP Publication No. 600, 2007, 7, 1부터 적용)으로서 총39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2)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신용장통일규칙은 강제적인 법률효력이 없는 임의규정이므로 거래당사자가 이를 적용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여 신용장거래에 적용된다.

따라서 거래당사자가 합의하여 신용장통일규칙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통일규칙과 다른 내용을 신용장상에 특약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신용장통일규칙보다도 우선 적용된다. 그리고 해당국의 강행법규가 신용장통일규칙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의 강행법규가 우선 적용된다. 결국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1. 해당국의 강행법규 --- 2. 당사자간의 특약 --- 3. 신용장통일규칙

Opening Bank: Bank of China Qingdao Branch

Form of Doc. Credit *40 A : IRREVOCABLE
Doc. Credit Number *20 : LC51K800166

Doc. Gredit Number *20 : LC51K800166

Date of Issue 31 C : 210419

Expiry *31 D : Date 210619 Place KOREA

Applicant *50 : SHANDONG LI-NING SHOEMAKING

CO., LTD. 248 MEISHAN RD, JUNAN, SHAN DONG. CHINA

Beneficiary *59 : MI SUNG INDUSTRIAL CO., LTD RM503/

505 PLAZA HOTEL BLDG, 1213-14 CHORYANG DONG DONG-GU, BUSAN KOREA

Amount *32 : Currency USD Amount 290, 988.00 Available with/by *41 D : Bank of china BY ACCEPTANCE

Drafts at··· 42 C : AT 90 DAYS AFTER SIGHT FOR 100 PCT OF THE INVOICE VALUE

Drawee 42 D : Linyi branch
Partial Shipments 43 P : ALLOWED
Transshipment 43 T : NOT ALLOWED
Loading in Charge 44 A : BUSAN KOREA
For Transport to: 44 B : QINGDAO PORT CHINA

Latest Date of Ship. 44 C : 210530

Descript, of Goods 45 A : RAW MATERIAL FOR SPORTS SHOES

QUANTITY: 42,480 PRS UNIT PRICE: USD6.85

ORIGIN: KOREA

TOTAL AMOUNT: USD290,988,00 CIF QINGDAO CHINA

PACKING: EXPORT STANDARD PACKING

Documents required 46 A:

- 1.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3 COPIES, INDICATING L/C NO. AND CONTRACT NO.
- 2.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IS OF LADING MADE OUT TO ORDER AND BLANK ENDORSED MARKED FREIGHT PREPAID NOTIFYING APPLICANT.
- 3. 2 COPYS INSURANCE POLICY/CERTIFICATE FOR 110 PCT OF THE INVOICE VALUE SHOWING CLAIMS PAYABLE IN CHINA IN CURRENCY OF THE DRAFT, BLANK ENDORSED, COVERING OCEAN MARINE TRANSPORTATION ALL RISKS AND WAR RISKS.
- 4. PACKING LIST IN 3 ORIGINALS INDICATING QUANTITY/GROSS AND NET WEIGHTS OF EACH PACKAGE AND PACKING CONDITIONS AS CALLED FOR BY THE L/C.
- 5. BENEFICIARY'S CERTIFIED COPY OF FAX/TELEX DISPATCHED TO APPLICANT WITHIN 24 HOURS AFTER SHIPMENT ADVISING NAME OF VESSEL, DATE, QUANTITY, WEIGHT AND VALUE OF SHIPMENT.

Additional Cond. 47 A:

1. A DISCREPANCY FEE OF USD54,00 WILL BE DEDUCTED FROM THE PROCEEDS IF DOCUMENTS ARE PRESENTED WITH DISCREPANCY(IES).

Details of Charges 71 B:

1. ALL BANKING CHARGES OUTSIDE THE OPENING BANK ARE FOR BENEFICIARY'S ACCOUNT. Presentation Period 48: DOCUMENTS MUST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WITHIN 10 DAYS AFTER BILL OF LADING DATE BUT WITHIN THE VALIDITY OF THIS L/C.

Confirmation *49: WITHOUT

Instructions 78:

- 1. ALL DOCUMENTS ARE TO BE FORWARDED TO BANK OF CHINA, LINYI BRANCH NO. 398 YINMENG ROAD LINYI SHANDONG CHINA IN ONE LOT BY 1ST AVAILABLE AIRMAIL.
- 2. UPON RECEIPT OF ALL DOCUMENTS IN ORDER, WE WILL DULY HONOUR/ACCEPT THE DRAFTS AND EFFECT THE PAYMENT AS INSTRUCTED AT MATURITY.

Send. to Rec. Info. 72: THIS LC IS SUBJECT TO UCP 2007 ICC PUB. NO. 600

6. 신용장의 종류

기준 및 종류	내용
취소가능 여부 (Irrevocable L/C와 Revocable L/C)	신용장은 취소불능(irrevocable)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취소불능이다.(UCP 600 제3조) 취소불능신용장인 경우에는 기본 관계당사자 전원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조건변경 및 취소를 할 수 없다.
확인여부 (Confirmed L/C와 Unconfirmed L/C)	수익자가 개설은행의 대외신용을 의심하거나 수입자 소재국의 정치, 경제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등에 신용장의 확인을 요구하게 되며, 통상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통지은행이 확인을 추가하여 통지한다. 이때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동일한 지급의무를 진다.
매입은행 제한여부 (Restricted L/C와 Open L/C)	Restricted L/C는 수출상이 매입을 의뢰할 수 있는 은행을 개설은행이 신용장상에 미리 지정해 놓은 신용장을 말하며, Freely Negotiable L/C(or Open L/C)는 수출상이 매입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용장(Available with any bank by Negotiation)이다.
상환청구권 발동여부 (With Recourse L/C와 Without Recoruse L/C)	With Recourse인 때에는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선지급한 대금을 개설은행 등으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 수출상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으나, Without Recourse인 때에는 일단 매입이 끝나면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음수표법의 규정에 따라 신용장상에 Without Recourse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상환청구권을 인정한다.(국내법 우선 적용)
양도가능여부 (Transferable L/C와 Non—Transferable L/C)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 가능하고, 양도는 수직적으로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분할선적이 가능한 경우에만 분할양도가 가능하다.
대금의 지급시기 관련 (Sight L/C 일람불, Usance L/C 기한부)	Sight L/C는 지정은행이 선적서류를 송부하면 개설은행은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 한 즉시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며, Usance L/C는 신용장 또는 기한부 환어음에 정해진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는 외상방식이다. Usance L/C는 신용공여자에 따라 Shipper's Usance L/C와 Banker's Usance L/C로 구분된다. Banker's Usance L/C의 경우 수익자는 At Sight로 대금을 지급받는다.
보증신용장 (Stand-by L/C)	무화환신용장(Clean L/C)의 일종으로 상품의 대금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이 아니고 주로 금융이나 보증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한 신용장이다. 보증신용장은 주로 현지금융을 보증하거나 국제입찰시 계약보증금, 이행보증금 등을 조달할 때 이용된다.

가. 신용장의 양도

1. 개요

신용장의 수익자(제1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제2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수익자가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로서 새로운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을 때 또는 개설의뢰인의 Agent 역할을 하는 경우 등으로 수익자가 직접 수출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사용되는 신용장이다.

2. 양도 목적

① 수출자가 수출쿼타를 보유하지 않았거나(쿼타 품목에 한함) 상품의 제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자로 하여금 직접선적과 매입을 하게 하는 경우

- ② 수출지에 있는 수입상의 대리점 또는 지사가 먼저 신용장을 일괄적으로 받아 놓고 실수출자에게 신용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 ③ 중계무역의 경우와 같이 중간차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중계업자가 L/C를 타사에 양도하는 경우
- ④ 신용장을 근거로 새로운 신용장을 개설할 담보능력 등이 없을 때

3. 양도 조건

- ① 양도취급 가능은행: 원신용장에 지급, 인수, 매입은행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은행이 양도은행이 되며, 자유매입신용장인 경우에는 신용장상에 양도은행이 사전에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 ② 양도가능신용장: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③ 양도는 1회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그러므로 제2수익자가 다른 제3수익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2차 양도는 금지된다. 단, 양수인이 원수익자에게 양도환원(transfer back)하는 경우는 양도취소로 간주하여 허용된다. 이런 경우, 원수익자는 또 다른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 ④ 분할양도는 분할선적이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능한 경우 제1수익자는 여러 제2 수익자에게 분할양도 할 수 있다.
- ⑤ 원칙적으로 원신용장 조건에 따라 양도되어야 하나 신용장 금액, 단가의 감액, 유효기간, 선적기간 및 서류제시기간을 단축하여 양도하는 등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여 양도할 수 있다.

4. 양도의 종류

(1) 전액양도와 분할양도

- ① 전액양도(Total Transfer): 신용장의 물량 전부가 1명의 제2수익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 ② 분할양도(Partial Transfer): 복수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하는 것으로서 분할선적이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2) 국내양도와 국외양도

원수익자가 소재하는 국가의 제2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국내양도, 타국에 소재하는 제2 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국외양도라고 한다.

☞ 송장대체(Substitution of Invoice)

① 원수익자가 원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신용장의 단가대로 작성된 자기의 송장과 제2수익자의 송장을 대체시키는 것으로 양도 시 감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수익자는 송장을 대체할 권리가 있다.

(예) 원신용장 금액: USD 10,000

양도신용장 금액: USD 9,000, 양도차액은 USD 1,000

제2수익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의 Seller는 제2수익자, Buyer는 제1수익자, 금액은 USD 9.000

제1수익자의 송장 대체: 제1수익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의 Seller는 제1수익자.

Buyer는 원신용장의 개설의뢰인, 금액은 USD 10,000

② 원수익자는 양 송장 사이의 차액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할 권리가 있다.

(예) 제2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발행인은 제2수익자, 지급인은 양도은행, 어음 금액은 USD9.000

제1수익자의 환어음 대체 : 제1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발행인은 제1수익자, 지급인은 개설은행, 어음금액은 USD 10,000

(3) 조건변경여부

- ① 단순양도: 원신용장의 조건변경 없이 제2수익자가 현지은행에서 Nego하여 개설은행 앞으로 직송한 후 원신용장 조건에 의거 결제 받도록 하는 양도. 제1수익자의 송장대체가 필요 없고 양도인의 중개 및 알선 수수료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무역외로 영수한다.
- ② 조건변경부양도: "송장대체부양도"라고도 하며 제1수익자가 중계차익을 목적으로 신용장의 금액, 단가, 유효기일 등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5. 절차

양도계약체결 ⇒ 양도신청 ⇒ 양도여부 검토 ⇒ 양도통지 ⇒ 수출이행

제1수익자가 전부(또는 일부) 양도통지서 발행의뢰서 "Application for Advice of Total(or Partial) Transfer"를 신용장에 지정되어 있는 양도은행에 제출

〈구비서류〉

- ① 수출신용장 원본
- ② 양도신청서
- ③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서명감)신고서(국외양도일 경우 양수인의 오퍼)

6. 양도 시 확인사항

- ① 당해 L/C가 양도가능(Transferable)신용장인지 여부
- ② 양도은행이 신용장상에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하도록 수권받은 은행인지 여부
- ③ 원수익자와 제2수익자의 공동연서에 의한 양도신청인지 여부
- ④ 분할양도의 경우 원수출신용장상에 분할선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분할양도금액이 원수출

신용장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

⑤ 제시된 원수출신용장에 의하여 기 취급한 금융이 없으며 기타 국내의 여건 등으로 양도를 금지하는 기재내용이 없는지 여부

7. 양도절차

- ① 양도은행은 제1수익자가 지시하는 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Transfer Advices」를 첨부하여 양수인인 제2수익자에게 원본교부, 이때 원신용장의 뒷면에 양도사실을 기재한다. 예를 들면 「This credit had been totally(or partially) transferred to ABC Co. for U\$ 12,000 by XYZ Bank」라고 명기한다. 특히 Partial Transfer인 경우 상품이 종류별로 되어 있거나 수량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의 뒷면에 당해 상품명이나 수량도 기재해야 한다.
- ② 양도은행은 양도인, 개설은행, 통지은행에 「Transfer Advices」의 사본을 교부하고 양수인에게는 양도은행이 작성한 양도신용장을 교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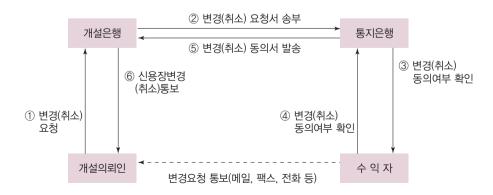
나. 신용장의 조건변경 및 취소

1 개요

신용장의 조건변경(Amendment)이란 이미 개설된 신용장의 조건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신용장의 조건변경은 신용장의 유효기간(expiry date)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수익자는 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개설의뢰인이 작성한 개설신청서 사본을 받아서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개설되는지, 수정할 사항은 없는지 검토한 후에 개설의뢰인에게 개설하도록 한다. 이는 개설 후에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조건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이에 따른 수수료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신용장을 통지 받은 수익자는 다시 한번 매매계약서 내용과 상이함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변경하여야 할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수입상에게 통보하여 조건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다



〈신용장의 조건변경 및 취소절차〉

- ① 개설의뢰인(자신의 요청 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거)이 개설은행에 조건변경(취소) 요청
- ②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게 조건변경(취소) 요청서 발송
- ③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조건변경(취소) 동의여부 확인
- ④ 수익자가 통지은행에게 조건변경(취소) 동의서 송부
- ⑤ 통지은행이 개설은행으로 수익자의 조건변경(취소) 동의서 송부
- ⑥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조건변경(취소) 통보

〈조건변경 및 취소당사자〉

- ① 개설은행
- ② 수익자
- ③ 확인은행(확인신용장의 경우)
- ※ 변경 및 취소는 당사자 전원이 합의해야만 효력발생
 - 변경사항 중 부분적 수락

동일한 조건 변경통지서 내에 두 가지 이상의 변경내용 중 수익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일부의 조건만 수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모든 내용을 수락하든지 아니면 거부하여야 한다.

- 조건변경서의 유효성
 - ① 조건변경서를 접수한 수익자가 수락의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건변경을 수락한 것으로 가주할 수 없다. 즉 침묵은 승낙이 아니다.
 - ② 수익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않고 있다가 변경된 조건에 일치시켜 서류를 제시하면 그 시점에 수락의 의사표시가 된다.

〈조건변경 시 제출서류〉

- ① 수입신용장 조건변경 신청서
- ② 기타 증빙서류

〈수출상의 조건변경의 주요사유〉

- ① 매매계약서 내용과 상이함이 있을 때
- ② 계약 당시 언급되지 않았던 조항이 있을 때
- ③ 지키지 못할 조건 및 제출 불가능한 서류 요청이 있을 때 (함정문구, 함정조건)
- ④ 계약 당시와 변동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원자재 가격인상으로 인한 단가 인상, 납기 맞추기가 어려울 경우 등)

〈조건변경의 내용〉

- ① 신용장의 선적기일 및 유효기일의 연장
- ② 신용장 금액의 증감
- ③ 수량, 단가, 총액의 계산 착오
- ④ 상품명세의 변경
- ⑤ 선적항 또는 도착항의 변경
- ⑥ 매매계약서 내용과 다른 사항
- ⑦ 지키지 못할 모든 조건(특히 중동지역에 소재하는 은행이 개설한 신용장)

〈조건변경사항 예시〉

- ① 신용장 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의 경우(원신용장 금액 USD 300,000) 증액시: L/C Amount is increased by US \$ 200,000 to US \$ 500,000 감액시: L/C Amount is decreased by US \$ 100,000 to US \$ 200,000
- ② 선적기일 또는 유효기일 연장의 경우 선적기일: Shipping date is extended to May 31, 2021 유효기일: Expiry date is extended to June 10, 2021
- ③ 상품명세 변경의 경우
 Descriptions of commodity are changed as follows;
 10,000pcs of MEN'S cotton shirts U.S.A. origin @US \$90 CIF Busan
- ④ 선적항 또는 도착항 변경의 경우

선적항 변경: Shipping port is changed into San Francisco instead of Seattle.

도착항 변경: Destination is changed into Busan instead of Incheon

〈조건변경시 유의사항〉

- ① 신용장통일규칙 제38조(양도가능신용장)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장은 개설은행, 확인신용장의 경우 확인은행 및 수익자의 동의 없이는 조건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 ② 개설은행은 그 자신이 조건변경서를 발행한 시점부터 그 조건변경서에 의하여 취소불능의 의무를 부담하며, 확인은행은 그 자신의 확인을 조건변경에까지 확장시킬 수 있으며 그 조건 변경을 통지한 시점부터 취소불능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확인은행은 그 자신의 확인을 조건변경에 확장하지 않고 통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개설은행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하고, 조건변경서를 통지할 때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
- ③ 수익자는 조건변경에 대하여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만약 수익자가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용장 및 아직 승낙되지 않은 조건변경에 일치하는 제시는 수익자가 그러한 조건변경에 대하여 승낙의 통지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 순간부터 신용장은 조건변경 된다.

- ④ 조건변경을 통지하는 은행은 조건변경을 송부해 온 은행에게 조건변경의 승낙 또는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다
- ⑤ 수익자가 조건변경통지서를 받았을 때 반드시 수락 또는 거절의 의사 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며, 그런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 ⑥ 수익자가 조건변경서를 받고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지 않다가 그 조건변경서의 변경내용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했다면 그 시점이 조건변경을 수락하는 시점이 된다.
- ① "만약 조건변경이 특정 기한 내에 수익자에 의하여 거절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된다"는 취지의 조건변경서상의 규정은 무시한다.(침묵은 승낙이 아니다) 개설은행이 "특정기간 내에 또는 특정일자까지 수익자가 그 조건변경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조건변경이 자동적으로 성립된다"는 문언을 삽입할 경우 이러한 문언은 무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⑧ 여러 개의 조건변경이 포함된 하나의 조건변경통지서에서 일부의 조건만 선택적으로(일부수락, 일부거절) 수락하는 것은 거절이 된다.
- ⑨ 확인신용장에서 개설은행이 조건변경을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조건변경에 대하여 확인은행으로 부터 별도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면 확인은행은 매입시 수익자의 대금지급 청구를 신용장 조건 위반을 이유로 지급 거절할 수 있다.
- ⑩ 1차 조건변경서는 수락하고, 2차 조건변경서는 수익자에게 불리한 조건일 경우 2차 조건변경서만 거절할 수 있다.
- ① 신용장 금액 및 수량을 변경하면서 신용장 금액은 증액하였으나 상품 명세서상에 수량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거나, 유효기일을 연장하면서 선적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조건변경을 하여도 실제로는 의미가 없어진다.
- ⑩ 사소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익자는 조건변경통지서를 받았을 때 즉시 수락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신용장의 취소〉

신용장의 취소(cancel)란 이미 개설된 신용장을 사용하지 않고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적으로 현재 사용하는 신용장은 대부분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이며, 수익자(beneficiary), 개설은행(issuing bank) 그리고 확인신용장의 경우 확인은행(confirmed bank)의 동의가 없이는 신용장을 취소할 수 없다. 또한 개설된 신용장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관계당사자인 수익자, 개설은행, 확인은행(확인신용장일 경우)의 동의가 있고 개설의뢰인의 요청이 있으면 취소가 가능하다.

다. 수출대금 회수(NEGO, NEGOTIATION)

1 절차

수출물품의 통관선적 ⇒ 화환어음 거래약정 체결(사전에 거래은행과 약정 체결해 둠) ⇒ 화환어음 및 선적서류작성·구비 ⇒ 화환어음 매입의뢰 ⇒ 은행의 매입서류심사 ⇒ 매입대금의 지급

〈화환어음 거래약정〉

최초거래시만 체결

〈주요내용〉

- ① 부대서류 및 화물은 매입 외국환은행의 어음채권 및 부대비용 지급의 담보
- ② 화화어음 및 부대서류의 운송 중 사고에 관한 처리방법 및 책임소재
- ③ 화환어음이 부도 또는 인수거절 되었을 경우 처리절차 및 부대화물의 처리절차
- ④ 기타 필요한 경우 담보의 제공 또는 화어음 대금의 상화 및 제비용의 부담문제

☞ 선적서류 심사내용

- ①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 ② 선적서류 상호간 모순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
- → 매입심사 후 선적서류에 불일치나 하자가 없으면 신용장 뒷면에 매입일자, 매입번호, 금액, 은행명 등을 기재한 후 수출자에게 교부
- → 매입대금은 수수료. 무역금융 융자액 등을 공제한 후 수출자의 구좌에 대체입금

☞ 매입금액 및 수수료(화가료)

① 일람출급신용장(at sight)

지급금액: 매입금액(U\$)×전신환매입율

차감금액(환가료): 매입금액(U\$)×대고객매매기준율×표준우편일수/360×년 환가요율

② 기한부신용장(usance)

지급금액: 매입금액(U\$)×전신화매입율

차감금액(환가료): 매입금액(U\$)×대고객매매기준율×(표준우편일수+usance 기간)/360×년 환가요율(일부 확정일 출급조건인 경우는 Usance 해당기간만 징구)

☞ 표준우편일수

Direct매입분 : JPY, MYR, SGD, HKD, THB, IDR-7일, 그 이외 통화-8일 매입제한 신용장의 경우 Re-Nego : 직접 매입기간에 3영업일 추가

〈선적서류〉

- 기본서류
 - ① 계약서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② 운송서류: 선하증권(Bill of Lading), 항공화물 운송장(Air Waybill)
 - ③ 보험서류: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또는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 송장보충서류
 - ①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②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 영사서류
 - ①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②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 ③ 세관송장(Customs Invoice)
- 기타서류
 - ① 수익자증명서(Beneficiary's Certificate)

〈매입의뢰시 구비서류〉

① 수출화어음 매입신청서

② 수출신용장 원본

③ 환어음

④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 일체

⑤ 수출신고필증

⑥ 기타 필요한 서류

〈매입시 주의사항〉

- ① 자유매입신용장의경우수익자는자신이거래외국환은행에서매입을진행한다. 매입제한신용장의 경우 수익자는 자신의 거래은행에서 1차 매입을 진행하고 지정된 매입은행에서 2차 매입(Renego)를 진행한다. 1차 매입은행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정된 매입은행(재매입은행)에 매입을 의뢰하는 은행이다.
- ② 서류 네고는 서류제시기간 이내로서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즉 두 가지 기일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 ③ 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을 위하여 은행이 지정된 경우 지정은행이 아닌 수익자의 거래은행에 유효기일까지 서류를 제시하면 하자가 된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유효기일 이내에 지정은행으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유효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닐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유효기일이 연장된다. 그러나 선적일은 은행 영업일 여부와 상관 없으므로 신용장 조건변경을 통해서 연장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

〈은행의 매입절차〉

- ① 서류의 접수: 접수증 발급
- ② 기장: 은행비치 매입대장에 기록
- ③ 신용장 조건과 일치여부 및 서류 상호간의 모순여부 심사
- ④ 보완지시: 송장, 어음 등 수익자의 서류에서 사소한 하자(즉시 보완가능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 ⑤ 매입이행: 신용장액면 금액에서 무역금융금액, 제수수료·이자 등을 공제한 잔액을 수출자 계정에 입금시킨 후 계산서만 수익자에게 발급함(이때 신용장 원본은 그 뒷면에 매입사실을 기재한 후 수익자에게 반환함)
- ⑥ Covering Letter 작성: 매입은행이 작성하는 서류로, 결제은행(개설은행 등)에 서류를 송부할 때 첨부하는 송부서류의 표지이다. 매입사실, 서류의 명세, 검토의견, 상환청구이행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⑦ 서류의 발송: 분실 등에 대비하여 서류를 2조로 나누어 각각 다른 항공편(특송)으로 2회에 걸쳐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용장에 서류 발송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신용장의 지시대로 이행해야 한다.
- ⑧ 상환요청서 발송: 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은행에 발송 매입은행은 신용장 상에 Reimbursing Bank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적서류는 개설은행으로 송부하고, T/T Reimbursing acceptable인 경우 상환은행에 T/T로 상환을 요청하고 T/T Reimbursing not acceptable인 경우 상환용 어음을 작성하여 발송한다. 송금신용장인 경우에는 개설은행에 매입은행의 계좌를 통보한다.

☞ 하자있는 선적서류의 매입

매입은행은 선적서류가 L/C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매입의뢰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음 방법 중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한다.

- ① L/C를 선적서류에 맞추어 조건변경을 한 후 매입하는 방법(Amend 후 Nego)
- ② L/C개설은행 앞으로 하자내용을 통보하여 매입여부를 전신으로 조회한 후 매입하는 방법 전신조회 후 매입(Cable Nego)
- ③ 매입은행이 환어음을 추심한 후 대금이 입금되었을 때 지급하는 방법(Collection Basis)(매입을 하지 않으므로 여신한도가 필요없고 환가료가 발생하지 않음)
- ④ 개설은행이 대금지급 거절시 수출자가 책임진다는 각서(확인서, Letter of Indemnity) 또는 보상장(L/G, Letter of Gurantee)을 징구한 후 매입하는 방법(L/G Nego) 불일치 내용이 경미하고 대금의 회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개설은행의 하자수용거부로 부도가 난 경우에도 수익자로부터 대금을 상환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할 때 이용한다.
- ※ 개설은행의 하자통지는 단 1회이다. 1회의 하자통지서에 모든 하자를 기재해서 통지하므로 수익자는 서류제시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면 하자내용을 모두 보완하여 매입은행을 통해서 개설은행에 재송부할 수 있다.

그러면 개설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 선하증권(Bill of Lading)

통상적으로 신용장이 요구하는 선하증권의 조건

- ① Full Set: B/L은 분실의 위험 등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원본 3통이 발행되며, 운송인은 그 중 1통만 제시되면 화물을 인도하므로 개설은행은 당해물품을 담보로 확보하기 위해 통상 Full Set(3통)를 요구하다.
- ② Clean B/L: 무고장 또는 무사고의 의미로, 화물의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적재되었다는 사항이 증권상에 기재되어 있다.(In apprante good order and condition) 반대로 사고부 또는 고장부 선하증권(Foul B/L(Dirty B/L)은 운송인이 포장 등 외관상 불완전한 화물을 인수하였음을 B/L상에 기재한 것으로 은행은 이러한 선하증권의 수리를 거절한다. 참고로 컨테이너 운송 시 FCL 화물인 경우 운송인은 컨테이너 내부 화물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바, 이 경우 운송인은 B/L상 물품의 명세란에 운송인 면책을 의미하는 "Shipper's Load & Count"라는 不知약관(Unknown Clause)을 표시하는데 이러한 B/L도 Clean B/L로 간주한다.
- ③ On Board B/L: 선하증권은 선적 B/L(Shipped B/L)과 수취 B/L(Received B/L)이 있다. 운송인이 화주로부터 물품을 받고 발행하는 Received B/L은 향후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면 운송인이 선적부기(On Board Notation)를 추가하여 선적 B/L이 된다.
- ④ Order B/L: 수화인(Consignee)의 배서에 의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선하증권이다. 신용장거래에서는 통상 선하증권 상의 수화인을 개설은행 지시식(to order of ×× bank, 개설은행이 선하증권에 최초로 배서) 또는 송화인 지시식(to order, to order of shipper, 선하증권 상의 Shipper가 최초로 배서)으로 발행한다.
- ⑤ Notify Party: 일반적으로 L/C 개설의뢰인인 수입자가 되며 화물이 도착하면 운송회사는 Notify Party 앞으로 화물도착통지(Arrival Notice, A/N)를 하여 화물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 선하증권 대체 운송서류

B/L을 대신하는 운송서류로서는 복합운송서류(Combined Transport Documents), 항공화물 운송장(AWB, Air Waybill), 우편소포수령증(Parcel Post Receipt), 화물수령증(Cargo Receipt) 등이 있다. 이러한 운송서류들은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UCP 600의 규정에 부합되는 한은행은 수리한다.

신용장 통일규칙 제6차개정(UCP600)에서 운송서류를 운송방식에 따라 해상선하증권, 비유통 해상운송장(Sea Waybill), 용선운송 계약부 선하증권(Charter Party B/L), 복합운송선화증권, 항공운송서류, 철도/도로/내수로 운송증권, 특송서류/우편수령 증 등으로 세분화 하였다.

- ① 해상선하증권 및 비유통 해상운송장의 경우에는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이 서명 또는 인증한 운송서류를 수리한다.
- ② 신용장이 허용한 경우 용선운송계약부 선하증권(Charter Party B/L)은 선장, 선주 또는

대리인이 서명 또는 인증한 운송서류를 수리한다.

- ③ 복합운송선화증권 경우 운송인, 복합운송인 또는 그들의 대리인 또는 선장이나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인증한 서류를 수리한다.
- ④ 항공운송서류 및 도로/철도/내수로 운송서류의 경우 운송인이나 대리인이 서명 또는 인증한 운송서류를 수리한다.
- ⑤ 기타 특송회사가 Stamp, 서명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한 특송서류 또는 우편수령증을 수리한다.

☞ 운송주선인 발행의 운송서류 수리여부

운송인이나 복합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명시되지 않은 「운송주선인 발행의 운송서류」는 「FIATA 복합운송서류」여부를 불문하고 수리를 거절하지만 UCP 600 제20조 선하증권의 규정에 따라 서명되고 발행된 운송주선인의 HOUSE 선하증권은 수리된다. 그리고 신용장에서 해상선하증권(Marine 또는 Ocean B/L)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순수한 운송주선인의 B/L, 즉 House B/L은 수리가 불가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 UCP 600 제20조 선하증권

- a. 선화증권은 그 명칭에 관계 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 i.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되어 있는 것: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또는 선장 또는 선장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은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야한다.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은 그 대리인이 운송인을 대리하여 서명하였는지, 또는 선장을 대리하여 서명하였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 ① B/L에 기재된 상품의 위험을 담보할 것
- ② 보험금 청구권이 은행으로 양도되어 있을 것
- ③ 최저 부보금액으로 신용장금액의 110%를 커버할 것
- ④ 부보일자가 B/L상의 선적일자 이전일 것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류로서 수출자에게는 물품대금 청구서, 수입자에게 매입물품 명세서의 역할을 하는 서류이다. 따라서 상업송장은 반드시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 작성시 유의사항

- ① L/C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할 것
- ② L/C상의 물품명세와 동일할 것
- ③ 신용장번호, 수익자, 수화인, 선박명, 목적지, 작성자의 서명이 정확할 것

☞ 환어음(Bill of Exchange)

국제 상거래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채권금액 전액을 지명인 또는 소지인에게 일정한 기일 및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의 유가증권으로서 무역거래시 제1질권으로 인정됨(제2 질권은 선하증권)

● 필수기재사항

필수기재사항은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법적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함(어음법 제1조)(④.

- ⑤, ⑦의 발행지는 기재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은 유지됨)
- ① 환어음(Bill of Exchange)임을 표시하는 문자
- ② 일정금액을 지급(Pav to~)할 것을 무조건 위탁
- ③ 지급인(Drawn under~)의 명칭
- ④ 만기의 표시(만기 표식이 없는 경우는 일람불어음으로 봄; 어음법 제2조 2항)
- ⑤ 지급지(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곳; 어음법 제2조 3항)
- ⑥ 지급을 받을 자(Payee) 또는 지급 받을 자(Pay to~)를 지시할 자의 명칭
- ⑦ 발행일과 발행지(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때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곳; 어음법 제2조 4항)
- ⑧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임의기재 사항

임의기재 사항은 어음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어음의 성격이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이다.

- ① 확어음의 번호
- ② 신용장 또는 계약서 번호
- ③ 환어음 발행매수 표시 등

☞ 개설의뢰인 앞 환어음발행 금지

수익자는 개설은행, 확인은행 또는 상환은행, 인수은행 등 지정은행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해야 하며,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에서 개설의뢰인 앞 환어음 발행을 지시한 경우 은행은 이러한 환어음을 제1질권으로서의 환어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추가서류」로만 간주한다.

라. 수입 신용장의 개설

1. 개요

수입자는 수출자와의 매매계약서(또는 Offer Sheet)상 약정된 내용을 근거로 거래 외국환은행과 신용장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는데, 신용장의 개설은 수입자의 거래 외국환은행이 대외적으로 신용장상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여신행위이므로 은행은 수입자가 대외보증채무 부담에 상응하는 여신한도(대출한도)가 가능한 경우 여신한도 이내, 여신한도가 부족한 경우 신용장금액 만큼의 담보 등을 요구한다.

수입계약 ⇒ 수입승인 ⇒ 신용장거래약정/외국화거래약정 ⇒ 신용장개설신청 ⇒ 수입신용장개설

2. 개설절차

수출입공고, 통합공고에 의해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이나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행과 외국환거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외국환거래 약정 시 구비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및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 ②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③ 인감증명서
- ④ 인감도장 및 사용인감
- ⑤ 실명확인증표
- ⑥ 약정서 등(은행 비치)

☞ 신용장거래약정서의 내용

- ① 수입대금의 지급확약
- ② 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장과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하는 제비용의 보상의무
- ③ 수입화물의 양도담보 제공 및 처분권
- ④ 선적서류상 부정·불명확한 사항에 대한 처리
- ⑤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따른 면책 등

(2) 수입신용장 개설신청 시 구비서류

- ① 취소불능화환 신용장 개설신청서
- ②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
- ③ (필요한 경우)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무역실무 길라잡이

- ④ 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⑤ 수입대행계약서(대행거래 시)
- ⑥ 담보설정증빙 등

☞ 신용장개설 방법

신용장 개설방법은 우편(Mail), 전신(Cable), SWIFT에 의한 개설이 있는데, 일부 개발도상국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SWIFT방식으로 개설되고 있다.

※ SWIFT는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어로 국제은행간 자금결제통신망을 의미하며, 일부 개도국 은행을 제외한 전세계 대부분의 은행들이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들은 1992년 3월에 일괄 가입하였다.

3. 신용장개설시 유의사항

구 분	유 의 사 항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① 수익자(수출자), 개설의뢰인(수입자)의 회사명, 주소 등은 약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좋다. ② 신용장 금액은 숫자와 문자를 병기하며 금액 앞에 'about'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는 경우 10% 이내에서 과부족을 인정한다. ③ 선적기일(S/D), 유효기일(E/D) 및 서류제시 기일 표기 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월표시는 문자로 하는 것이 좋으며, 날짜 표시 앞에 to, until 등의 표현이 있을 경우 그날자체도 포함된다. 또한 제시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운송서류 발행일 이후 21일 이내로서 유효기간까지 제시해야 한다. ④ 신용장은 개설은행에 의해 명시적으로 "Transferable"이라고 표시된 경우에 한해 양도할수 있다.
환어음 및 결제에 관한 사항	① 환어음 발행금액은 신용장 액면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지급기일(Tenor)은 계약서 등 지급근거와 일치해야 하는데, 일람불(At Sight)과 기한부 (Usance, ×× days after sight)가 있다. ③ 신용장 사용방법에 따른 종류는 지급(Payment), 연지급(Deferred Payment), 매입 (Negotiation), 인수(Acceptance) 4가지가 있으며, 매입신용장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	① 요구하는 선적서류의 종류와 통수 및 선적서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한다. ② 선적서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Insurance Certificate)등의 기본서류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의 보충서류로 구분한다.
상품 및 선적에 관한 사항	① 상품에 대한 과다한 명세는 지양하고 명세가 복잡한 경우 대표적인 상품명세만 적고 Details as per Offer(Contract) No~등으로 표시한다. ② 선적기한 및 선적항, 도착항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 분할선적(Partial Shipment)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 분할선적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수조건 (Special	특수조건은 수입자의 국가, 수입상품 및 거래방식 등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신용장 개설의뢰인(수입자)이 수익자(수출자)의 사전양해 없이 삽입한다. 따라서 수익자는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이행 불가능한 사항인 경우 개설의뢰인에게 통보하여 변경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Instructions)	일반적으로 수익자(수출자)가 부담하나 Less Charge 등의 처리에 있어서 가끔 신용장거래 당사자 간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예) All banking charges outside Korea are for beneficiary's account.

구 분	유 의 사 항
	(2) 선적서류 제시기간 신용장에 제시기간을 기재하였다면, 그 기간 내에 제시해야 한다. 신용장에 제시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선적일 다음날부터 21일까지 제시해야한다. 위 기간이 경과한 경우, Stale Document가 된다. 이 경우 지체서류(기간경과 서류) 용인조항(Stale documents acceptable)이 없는 한 수리거절 사유가 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선적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기간 경과서류 수리허용 조항의 예)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shipping document are acceptable.
	(3) 신용장의 양도 관련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Transferable'이라고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양도가능신용장은 1회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
	(4) 중계무역 시 제3자 서류 허용여부 중계무역의 경우엔 제3자가 송화인(Consignor)으로 되어 있는 운송서류(제3자 선하증권, 수익자 이외의 자가 shipper로 기재된 선하증권)를 수리 거절한다는 문언이 없는 한 수리한다.
	(5) 과부족 용인조항(More or Less Clause) 신용장에 명시된 상품의 수량이 초과 또는 부족해서는 안된다고 약정하고 있지 않는 한, 어음발행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5%의 과부족이 허용된다. 단, 이러한 과부족 허용한도는 수량을 포장단위 또는 개개품목의 개수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달리 금지하지 않는 한 과부족이 허용되는 제품은 수량을 길이, 무게, 부피로 기재한 제품(Bulk)이다. (예) Tolerance of 5% more or less in amount and quantity is acceptable.
	(6) 선박회사 지정조항(Nomination Clause) 정형거래조건을 EXW, FOB, FCA 등과 같이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채택할 경우 수입자가 운송회사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Nomination 조건) (예) Shipment to be effected by~shipping co. only.
	(7) 개설은행 인수 신용장(Banker's Usance L/C)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기한부 어음을 인수 · 할인하도록 하는 Banker's Usance 신용장인 경우, 수출자는 기한부 어음을 발행하지만 매입은행은 일람불로 매입 처리하게 된다. 즉 물품대금에서 외상기간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지 않는다. (예) Beneficiary's drafts drawn under this credit are negotiable on at sight basis irrespective tenor of draft.

수입신용장(SWIFT MT 700) 개설 사례

Application header block:

: Input/Output Identifier : I Outgoing Message

: Transaction Typer : 700 issue of a documentary credit

: Transaction Priority : n Normal

: From : WOORI BANK, SEOUL : To : HANKOOK BANK

HONG KONG BRANCH, HONG KONG

Text Block:

/59: beneficiary

/27 : sequence of total : 1/1

/40A : form of documentary credit : IRREVOCABLE /20 : documentary credit number : M1234 606NS00018

/31C : date of issue : 21/06/24

/31D : date and place of expiry : 21/08/20 HONG KONG /50 : applicant : KOREA TOYS CO., LTD.

15-1, SAMSUNG-DONG GANGNAM-GU, SEOUL, KOREA

: CHINA TOYS CO., LTD. RM 1000 CHAI WAN IND. CITY

PHASE 1, 60 WING TAIRO, CHAIWAN H.K.

/32B: currency code amount : USD 119,000.00 /39A: pct credit amount tolerance : 10/10 /41D: available with/by name, address : ANY BANK BY NEGOTIATION

/42C: drafts at : AT SIGHT

/42A: drawee : HONG KONG FIRST BANK LTD., HONG KONG(ADDR:

2007, JARDINE HOUSE 1 CONNAUGHT PLACE, CENTRAL,

HONG KONG)

/43P: partial shipments

: ALLOWED

/43T: transshipment

: NOT ALLOWED

/44A: on board/disp/taking charge

/44B: for transportation to

: BUSAN, KOREA

/44C: latest date of shipment

: 21/08/10

/45A: descr goods and/or services

700 PAIRS OF CHINESE GIANT BEAR TOY SIZE: MIN 1.5 METERS AT USD170.00 F,O,B,SHIDAO,CHINA

/46A: documents required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QUINTUPLICATE

+PACKING LIST IN TRIPLICATE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WOORI BANK MARKED FREIGHT COLLECT AND NOTIFY APPLICANT

+CERTIFICATE OF ORIGIN /47A: additional conditions

ALL DOCUMENTS MUST BEAR OUR CREDIT NUMBER M1234 606NS00018

T/T REIMBURSEMENT NOT ALLOWED QUANTITY 10 PCT MORE OR LESS ALLOWED

+The documents indicating as the consignor of the goods a party other than the beneficiary of the credit acceptable.

/71B: charges : ALL BANKING COMMISSIONS

AND CHARGES INCLUDING REIMBURSEMENT

CHARGES OUTSIDE KOREA ARE FOR

ACCOUNT OF BENEFICIARY

/49 : confirmation instructions : WITHOUT

/53A: reimbursement bank : HONG KONG FIRST BANK LTD., HONG KONG(ADDR:

2007, JARDINE HOUSE 1 CONNAUGHT PLACE, CENTRAL,

HONG KONG)

/78: instructions to pay/acc/neg bk:

DRAFTS MUST BE SENT TO DRAWEE BANK FOR YOUR REIMBURSEMENT AND ALL DOCUMENTS TO US BY COURIER SERVICE IN ONE LOT

/72: sender to receiver information : THIS CREDIT IS SUBJECT TO U.C.P(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마. 수입대금지급

1. 개요

신용장방식 거래 시 매입은행으로부터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접수한 개설은행은 제시된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최대 5영업일 이내에 심사하고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즉시 환어음을 결제 또는 인수한다. 그리고 개설의뢰인(수입자)이 수입대금을 결제(또는 인수)하면 선적서류를 인도한다. 선적서류를 인도받은 수입자가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후 수입물품을 인수하면 수입절차가 완료된다.

2. 절차

〈수입선적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선적서류 접수 및 심사 \rightarrow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 도착통지 및 대금지급 청구 \rightarrow 환어음결제 및 선적서류인도 \rightarrow 물품통관 \cdot 인수

〈수입선적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선적서류 접수 및 검토 \rightarrow 선적서류 도착통지 및 대금지급 청구 \rightarrow 선적서류 불일치에 따른 조회 \rightarrow 하자선적서류 수리 여부를 개설의뢰인과 협의 \rightarrow 선적서류 수리 여부 통지

☞ 은행의 서류 심사

- ① 은행이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기준은 신용장통일규칙과 「국 제표준 은행관행(ISBP,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은행의 서류심사와 수리여부 결정은 선적서류를 영수한 익일로부터 "제5영업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신용장에 서류의 지정없이 조건 만을 명시한 경우 그러한 조건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무서류 조건), 따라서 Stand-by Credit에서도 차용증 등 서류의 제시가 요구된다.
- ④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 서류가 제시된 경우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과 하자있는 서류의 수리여부(권리포기, Waiver of Discrepancy)를 교섭할 수 있다.

☞ 수입대금 결제금액 산정방법

- ① 송금방식인 경우 전신환매도율(T.T. Selling rate)×수입금액=결제금액
- ② 차기 또는 상환방식인 경우 전신화매도율+환가료{통화별 연환가료율×7(또는 8일)/360×매매기준율}=

수입어음 결제율 수입어음 결제율×신용장금액 = 결제금액

③ Usance인 경우 물품대금=신용장금액 × Usance 상환일 기준 전신환매도율 Usance 이자=수입금액 × Usance 이자율 × <u>Usance 기간</u> ×수입어음 결제율

☞ L/G 발급 시 유의사항

- ① L/G가 발급되면 추후 도착하는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 ② 일람 후 정기출급조건의 기한부 신용장인 경우 기간개시의 기산일이 L/G발급일이다.
 - L/G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 ① 발급은행소정의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및 보증서 발행신청서 각1부
 - ② 선하증권 사본
 - ③ 상업송장 사본
 - ④ 화물도착통지서(Arrival Notice)
 - 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각서 등)

제4절

포페이팅(Forfaiting) 방식에 의한 수출입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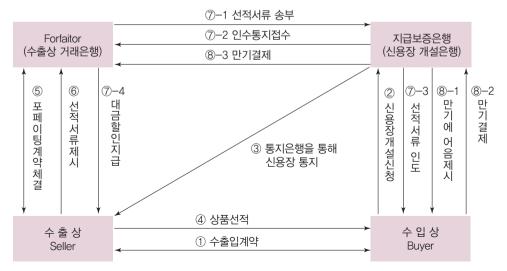
Forfaiting은 수출상이 현금을 미리 받고 Forfaiter에게 외상채권을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으로 양도한다는 의미이며 상환청구권 없는(Without Recourse) 조건으로 수출환어음을 매입, 할인하는 금융기법으로서 수출입 거래방식이라기 보다는 국제금융기법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수출시점으로부터 수출대금의 회수기간까지의 기간이 장기인 경우, 수입국가의 위험도가 높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경우, 신용도가 낮은 수입자와 거래할 때 적합한 무역금융기법이다.

여기서 Without Recourse(무소구조건)라는 것은 수출자로부터 수출채권을 양수받은 Forfaiter가 채무자로부터 어음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출자에게 할인 지급한 어음대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로, Forfaiting 거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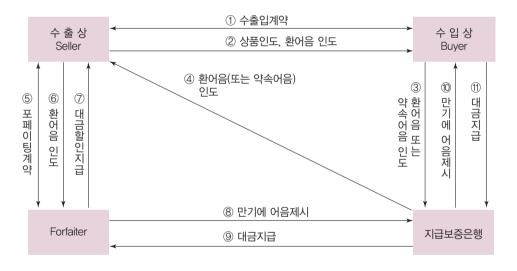
Forfaiting 거래란 수출상이 수입상으로부터 받을 중장기외상채권(환어음, 약속어음, 통상 1년 이상 10년)을 Forfaiter에게 ①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②고정금리부로 할인판매하고, ③ Forfaiter는 수입상 거래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나 지급확약(Aval,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이나 수입상이 발행한 약속어음 뒷면에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지급을 보증한다는 문구를 기입한 문서)을 믿고 이 외상채권을 매입, 할인한 후 채권 만기에 원리금을 받는 방식이다. 포페이팅 방식은 수입상 또는 개설은행의 지급불능위험의 회피, 수출자의 매입, 할인 담보제공 불필요 및 여신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금조달 여력 제고 효과가 있다.

2. 포페이팅(Forfaiting) 방식에 의한 수출입 절차 도해(신용장 개설)

신용장에 의한 포페이팅 거래 절차 도해



- ① 수출상과 수입상이 Forfaiting 거래 내용에 합의하고 수출입계약을 체결. 수입상이 Usance L/C로 결제를 원하는 경우에 수출자는 포페이팅 금융이 가능한 국가와 은행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② ③ 수입상의 요청으로 개설은행은 기한부신용장을 개설, 통지은행을 통해 수출자에게 통지한다.
- ④ 수출상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수출물품을 선적한다.
- ⑤ Forfaiter는 수입국 및 개설은행의 위험도,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고정이자율 등을 결정해서 수출상과 Forfaiting 계약을 체결한다.
- ⑥ 수출상은 화어음. B/L. Invoice 등 선적서류를 작성하여 Forfaiter에게 제시한다.
- ⑦ 선적서류를 제출받은 Forfaiter는 개설은행에 서류를 송부하고 개설은행이 선적서류에 대한 인수의사를 통보받으면 대금을 지급한다.(원칙은 Forfaiter가 선적서류를 접수하면서 대금 지급)
- ⑧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적서류를 인수하면(Acceptance) 수출상은 대금회수 위험으로부터 벗어 나며 Forfaiter는 만기일에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보증에 의한 포페이팅 거래 절차 도해

- ① 수출상과 수입상이 Forfaiting 거래 내용에 합의하고 수출입계약을 체결한다.
- ② 계약조건에 따라 수출상이 수입상 앞으로 선적한다.
- ③ 수입상은 수출상이 자기 앞으로 발행한 환어음 또는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거래은행인 지급보증은행에 제출하며 보증을 요구한다.
- ④ 지급보증은행은 어음에 AVAL(어음보증)을 하거나 별도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수출자에게 송부한다.
- ⑤ 수출상은 Forfaiter와 Forfaiting 계약을 체결한다.

무역실무 길라잡이

- ⑥ 포페이팅 계약체결 시 수출상은 보증은행에서 받은 지급보증서 또는 "AVAL"을 추가한 어음을 Forfaiter에게 인도한다.
- ⑦ Forfaiter는 환어음을 인수한 후 할인대금을 수출상에게 지급한다.
- ⑧ 어음의 만기에 Forfaiter는 "AVAL"또는 지급보증서를 보증은행에 제시한다.
- ⑨ 지급보증은행은 Forfaiter에게 대금을 결제한다.
- ⑩-⑪ 지급보증은행은 수입자에게 어음 등을 제시하고 대금을 수취하여 거래를 종료한다.

제5절

팩토링(Factoring)방식에 의한 수출입

1. 개요

팩토링방식이란 수출상은 대금회수의 안전문제 때문에 신용장 거래를 원하지만 수입상은 상품의 품질보장 등을 이유로 신용장 거래를 기피하고, 수출상은 일람지급거래를 원하나 수입상은 외상거래를 희망할 때, 대금결제에 대한 양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낸 국제금융기법의 일종이다.

국제팩토링(International Factoring)은 국제팩토링기구에 가입한 회원(팩터)의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무신용장방식의 거래로서 팩터링회사(Factor)가 수출상과 수입상의 사이에서 신용조사 및 신용위험의 인수(지급보증), 전도금융의 제공, 외상채권의 회수, 기타 업무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무신용장방식인 O/A, D/A 등 후불 결제방식에 수입팩터의 "신용승인"이 첨가되어 수출상의 수출대금회수 위험을 줄이는 거래이다.

신용승인(Credit Approval)이란 수입상이 자금부족, 파산 등 재무상의 이유로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수입팩터가 그 대금을 대신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일종의 보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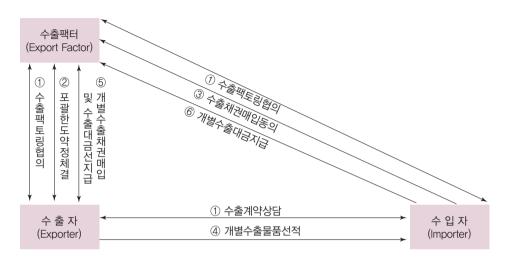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팩토링 그룹인 FCI(Factors Chain International)에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국제팩터링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2.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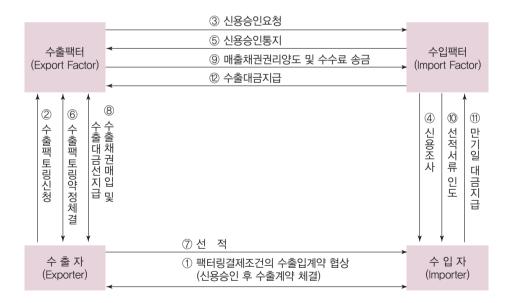
- ① Factoring 대상거래는 O/A와 D/A, 즉 사후결제방식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원칙적으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전대금에 대한 소구불능(Without recourse)조건으로 진행되지만 Factor의 조건부 소구도 가능하다.
- ③ 수출입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수출 Factoring과 수입 Factoring으로 구분된다.
- ④ Factoring 수수료는 수출자가 부담하고 수출자는 수수료를 수출원가에 반영한다.
- ⑤ 수출팩터와 수입Factor를 같이 이용할 때는 제휴방식 팩토링(Two factors), 수출팩터만 이용할 때는 직접방식 Factoring(One factor)이 된다.

3. Factoring(팩토링) 방식에 의한 수출입 절차도해

직접방식 거래 구조



제휴방식 거래구조



4. Factoring 거래와 Forfaiting 거래 비교

항 목	Factoring	Forfaiting
1. 금액	일반적으로 소액(수입자 신용한도 이내)	비교적 거액(소액도 가능)
2. 외상기간 단기(1년 이내. 3개월 미만이 대부분)		장기(2년 이상 10년 이내)
3. 소구권	with Recourse, without Recourse 둘 다 가능	without Recourse만 인정
4. 금리	제한 없음	고정금리로만 할인
5. 지급근거	Factor의 신용승인	수입상거래은행의 지급보증(또는 Aval)
6. 거래방식	사후송금방식(가장 많음), D/A방식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이 매개체
7. 대상채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매출채권까지	개별적으로 확정된 매출채권에 국한
	포함될 수 있다.	
8. 취급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수출입은행 및 일부 외국계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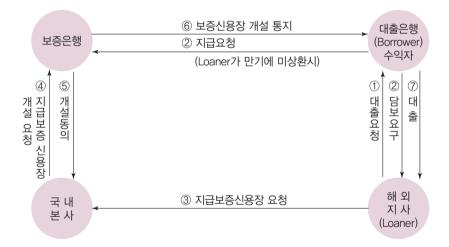
제6절

보증신용장

1. 개요

- ①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은 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상품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과 달리 금전대차 또는 채무보증 등과 관련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급보증상대은행으로 하여금 특정인에게 금융지원 또는 채무보증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특정인이 만기에 채무의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을 대신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약속증서로 특수한 무화환신용장(clean credit)이다.
- ② 일반적으로 보증신용장은 해외현지법인이나 지점 또는 관련 거래선이 자국 상사의 물품수입과 관련하여 현지은행에 현지금융담보의 조건이나 건설, 용역 및 플랜트수출과 관련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선수금환급보증 등에 대한 지급보증서의 대용으로 개설은행이 수익자 앞으로 발행하여 개설의뢰인이 채무의 상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수익자가 거래은행에서 보증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발행하여 사용되고 있다.

2. 보증신용장의 절차 도해



3.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보증

- ① 수출선수금 환급보증서(advance payment bond): 계약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수입상이 사전에 상품의 공급자에게 미리 계약의 일정금액(대개 10% 내지 20%)을 선수금(先受金)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상품의 공급자측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한 선수금의 반화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에 불응하는 경우 보증서 발행은행에 지급을 청구한다.
- ② 현지금융 담보보증: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의 외국은행에서 운영자금을 위한 현지금융을 융자받거나, 건설업체가 해외현지에서 사용할 장비나 운영자금 등 현지금융(local finance)을 조달하고자 할 때 국내본사의 거래은행이 해외지사의 거래은행을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는 보증서
- ③ 수출계약 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수출이행을 위한 계약이행 보증서인 P-Bond를 발행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 선수금 등을 반환한다.

4. 해외건설 용역 사업과 관련된 보증

- ① 입찰보증서(Bid bond) : 주로 건설공사에 관련된 입찰보증금으로서 응찰자가 현금(예상입찰금액의 $5\sim10\%$)을 예탁해 두는 대신에 자신의 거래은행에 요청하여 은행의 보증서를 발주처 앞으로 발행하여 제시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는데 이를 입찰보증서라고 한다.
- ② 계약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건설공사의 계약시 발주처는 계약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낙찰자에게 은행이 발행한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그 금액은 통상 계약금액의 전액에 해당하며 기간은 계약의 이행완료시점까지 정하게 된다. 그러나 보증서의 금액은 추후 계약의 이행율에 따라 점차 줄어들게 된다. 통상 P-bond라고 한다.
- ③ 선수금환급보증서(Advance Payment bond): 계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발주처가 사전에 건설회사에게 미리 계약의 일정금액(대개 10~20%)을 선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발주처는 건설회사 측이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한 선수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보증서 발행은행에 지급을 청구하게 된다.
- ④ 하자보상보증서(Maintenance bond): 건설공사 완료 후 발주처는 일정기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회사가 책임을 지고 수리 또는 보수공사를 하도록 요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증금 대신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7절

무역보험제도

1. 개요

무역보험이란 해상적하보험과 같이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할 수 없는 위험을 담보해주는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 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 등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의 수출보험제도가 있으며 원유, 철, 시설재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이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거나 국내기업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지원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수입보험제도를 합한 개념을 무역보험이라 할 수 있다.

가. 수출보험

수출보험제도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위험 가운데에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금지연 또는 거절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귀한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1. 운영종목

	구 분	내 용
단 기 성 보 험	단기수출보험 (선적 후)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
	포페이팅보험	은행이 포페이팅 수출금융 취급 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만기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단기수출보험 (수출채권유동화)	은행이 수출입자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채권을 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한 후 매입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패키지)	농수산물 수출 시 발생하는 여러가지위험(대금미회수위험, 수입국 검역위험, 클레임비용 위험)을 한번에 보장하는 농수산물 수출기업용 맞춤 상품
	중소중견 Plus*보험	중소기업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 현행 단기수출보험이 개별 수출거래 건별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반면, 동 제도는 수출기업의 전체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위험별 책임금액을 설정하여 운영

7 H		
구 분		내 용
단 ₋ 기 성 보 험	단체보험	기존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에 단체보험 개념을 도입, 지원기관 또는 단체(협회등)가 제반 보험계약절차를 진행하여 일괄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중소중견기업은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도
	수출안전망보험	기존 단체보험 제도를 활용, 특정단체가 보험계약자로써 수출초보 중소기업(연간 수출 U\$10만 이하)에 대한 대금미회수 위험을 보장 * 지원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가 제반 보험계약절차를 진행하여 일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도로 지원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가 보험료 지원 * 별도의 통지절차나 수입자 신용조사 없이 보험기간동안 발생한 피보험자의 정상 수출거래에 대한 대금미회수위험 담보(단, 보험책임금액(통상 U\$2만) 이내)
중 장 기 성 보 험	중장기수출보험 (선적 전)	수출 물품의 제작기간 중 발생하는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을 이행하였으나 수입자의 결제자금인출 위험 발생으로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수출자의 손실을 담보함으로써 수출자의 적극적인 수출추진을 지원코자 마련된 제도
	수출기반보험(선박)	금융기관이 국적외항선사 또는 국적외항선사의 해외현지법인(SPC포함) 2년 초과의 선박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공급자신용	산업설비, 선박, 플랜트 등 자본재상품 수출의 경우 통상 계약금액이 거액이고 대금의 상환기간이 장기이며, 수입국이 대부분 정치 ·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에서 수출대금미회수 위험이 항상 존재함. 이와 같이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자본재상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 비상위험 및 수입자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출자의 대금미외수 위험을 담보
	구매자신용	자본재상품 등 중장기수출과 관련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이 수입자 또는 수입국 은행 앞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연불금융을 제공하는 구매자신용방식에 대하여 대출 원리금 회수불능을 담보
	환경심사지침	중장기수출보험 인수 심사 시 수입국의 시행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보험지원대상 거래의 스크리닝, 환경검토, 환경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위험을 심사관리함.
	해외사업금융보험	국내외 금융기관이 외국인에게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기간 2년 초과 조건으로 공여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보증서(Bond)를 발급 후, 보증채무를 이행 시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해외공사보험	해외공사계약 상대방의 신용위험 발생, 해외공사 발주 국 또는 지급 국에서의 비상위험 발생에 따라 손실을 입게 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
	해외투자보험(주식, 대출, 보증채무)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대상국에서의 수용, 전쟁, 송금위험 등으로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이행 등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해외투자보험 (투지금융)	국내기업 앞 해외자원개발, 해외 M&A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미회수위험을 담보

구 분		내 용
중	해외지원개발 펀드보험	해외자원개발법상의 자원개발펀드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의 일부를 보상
장 기	서비스종합보험 (일시결제방식)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게 운송, 관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제공 상대방으로부터 서비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성 보	서비스종합보험 (기성고 · 연불방식)	국내기업이 시스템통합(SI), 기술, 콘텐츠, 해외엔지니어링 등의 서비스를 수출하고 이에 따른 지출비용 및 대가를 회수하지 못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험	0 지율 변동보험	상환기간 2년 이상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중장기 수출보험(구매자신용)에 부보한 금융기관이 이자율 변동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이익은 환수)
환변동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또는 수입으로 인해 외화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상품
71	탄소종합보험	교토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획득사업을 위한 투자, 금융, 보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종합적으로 담보
기 타 보 험	녹색신업 종합보험	지원가능한 특약항목을 「녹색산업종합보험」 형태로 제정하고, 녹색산업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이용 보험약관에 수출기업이 선택한 특약을 추가하여 우대하는 제도
	부품 · 소재 신뢰성보험	부품·소재 신뢰성을 획득한 부품·소재 또는 부품·소재 전문기업이생산한 부품· 소재가 타인에게 양도된 후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
수 출 신 용 보 증	선적 전 보증	수출기업이 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또는 수출유관기관들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함에 따라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제도
	선적후보증	수출기업이 물품을 선적한 후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 의뢰할 때에 매입은행의 매입대금에 대해 보증하는 제도, 수출자는 외상으로 수출한 후 매입대전을 미리 회수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음
	NEGO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보증하는 제도
수 입 보 험	수입자용	국내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 주요자원과 페기물처리시설, 공장자동화시설, 산업 기술연구개발시설 등 시설재 그리고 첨단제품 및 외화획득용원료를 대상으로 함
	금융기관용	금융기관이 주요자원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2. 담당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Tel 1588-3884), http://www.ksure.or.kr

제8절

수출입대금 결제방법과 외국환거래법

1. 개요

- ①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외국환의 지급, 영수 또는 계정간 이체를 함에 있어 결제기간, 금액 등을 국제적인 표준방법으로 결제토록 한다.
- ② 결제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만을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negative list system)
- ③ 경상대외거래의 지급·영수 절차를 외국환은행 신고제 또는 자유화로 전환, 외화의 영수는 물론 지급에 있어서도 외국환은행은 증빙서류만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수리· 처리한다.

2. 결제방법의 일반적인 요건

 항 목	요 건
1) 통 화	① 통화의 지정제도를 폐지(96. 6. 1), 자기책임하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현실적으로 경상거래시 미달러화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수준이며(80% 이상), 대고객 전신환매매율이 고시되는 40개 통화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밖의 통화로 계약하려면 사전에 외국환은행 본점 영업부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출입대금 결제	수출입대금 등 지급 또는 영수할 금액은 원칙적으로 송장금액 전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도록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출대금과 수입 대금을 서로 상계하거나 수출입대금에서 미리 수수료 등을 공제한 뒤 영수 또는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외국환은행장 또는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한다. ①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하여 상호계산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 서식의 상호계산신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호계산계정의 기장은 당해 거래가 물품의 수출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수출입 또는 용역제공의 완료 후 30일 이내,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따른 채권ㆍ채무의확정 후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③ 상호계산계정의 결산은 회계기간의 범위내에서 월단위로 결산주기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계기간의 범위 내에서 결산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미상호계산계정의 대차기잔액은 매 결산기간 종료 후 3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한 후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한다. ⑤ 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는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미화 5천불 이하의 상계 삽입바랍니다. • 상호계산 계정 ①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하여 상호계산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상호계산신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상호계산계정의 기장은 당해 거래가 물품의 수출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수출입 또는 용역제공의 완료 후 30일 이내,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따른 채권ㆍ채무의

항 목	요 건	
2) 수출입대금 결제	③ 상호계산계정의 결산은 회계기간의 범위내에서 월단위로 결산주기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계기간의 범위 내에서 결산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호계산계정의 대차기잔액은 매 결산기간 종료 후 3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한 후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한다. ⑤ 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는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대외채권 회수의무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 성취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채권의 회수)를 2017. 6,29 폐지함으로써 법적 강제성은 폐지되고 이제 자신을 위해 회수하는 문제만 남게 되었다.	
3) 한국은행 총재 신고사항	 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거래로서 ① 본ㆍ지사간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② 본ㆍ지사간 수출선수금 수령(수출대금의 물품 선적 전 수령) ③ 본ㆍ지사간이 아닌 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산업설비,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수입거래로서 ④ 계약건당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물품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 수입한 금의 미가공 재수출 ⑤ 계약 건당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는 송금방식의 지급 상기 ③ 및 ⑤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가 가능하다. 	
4) 대응수출입 이행의무	① 건당 5만불이 넘는 수출대금을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송금받았을 때는 대응수출을 이행하거나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건당 2만불이 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나 물품을 받기 전에 송금했을 때는 대응수입을 이행하거나 대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	
5) 제3자에 대한 지급 또는 영수	수출입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영수할 때에는 신고면제 사항이나 제3자에게 수입대금 등을 지급할 때는 금액에 따라 5,000불 까지는 신고면제, 5,000불 초과 1만 불까지는 외국환은행장 신고, 1만 불 초과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6)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또는 영수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단을 수령하는 경우, 신고 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확인 · 세관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예외 사항 ① 외항 항공기 또는 선박안에서 매입, 매각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 영수	

항 목	요 건
	② 해외여행자,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가 해외여행경비 등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 ③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라 송금수표, 우편환 또는 유네스코쿠폰으로 지급 ④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 표시 거래를 위해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 ⑥ 예금, 신탁계약 등 자본거래에 의거 인정된 외화자금을 직접 예치ㆍ처분하는 경우 및 인정된 거래의 대가를 당해 예금기관이 발행한 외화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국내에서 직접 지급 ⑦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의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 ⑧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등(여행자카드 포함)으로 해외여행경비, 국제단체 회비, 외국 간행물에 논문 등 게재료, 기타 인정된 거래대금을 국내에서 지급 ⑨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금을 직접 지급 ⑩ 법인소속의 해외여행자가 당해 법인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 ⑪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설치, 외국부동산 취득 규정에 의한 건당 미화 1만불 이하 대외지급수단을 직접 지급 ⑪ 원양어업자가 원양어로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의 원리금 또는 어로경비 및 해외지사의 유지활동비를 외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어획물의 판매대금으로 상환하거나 지급
6)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또는 영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확인사항 ①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여행업자,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여 휴대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오외국환은행장 확인사항 ①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물품을 외국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출국하는 자가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를 휴대수출하여 당해 수리, 검사비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 ②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통화를 휴대수출하여 외국에서 운항 경비를 직접 지급 ③ 원양어업자가 어업규정준수 확인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 상대국의 감독관 등에게 지급 하여야 할 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 ④ 영화, 음반, 방송물 및 광고물을 외국에서 제작함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거주자가 대외지급 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외국에서 직접 지급 ⑤ 스포츠경기, 현상광고 등과 관련한 상금을 당해 입상자에게 직접 지급 ⑤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를 포함)가 국내보수 또는 소득을 대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으로부터 매입한 애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 ⑦ 수출, 해외건설 등 외화획득을 위한 여행자, 방위산업체 근무자, 연구목적여행자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금액을 휴대수출하여 지급 ⑤ 외국에서의 치료비, 수학기관 등록금, 연수비 등 교육관련 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 ⑤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를 포함한다)가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 ⑩ 해운대리점 또는 선박관리업자가 비거주자인 선주(운항사업자를 포함)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국내에 입항 또는 국내에서 건조중인 선박의 외항선원 급여 등 해상운항경비를 외항선박의 선장 등 관리책임자에게 지급

제9절

환율 및 환위험 관리방안

1. 환율(Exchange Rate)

(1) 정의

환율(foreign exchange rate)이란 자국화와 외화의 교환비율로써 외국환이라는 상품에 대한 자국화의 가격을 말한다. 한 나라의 통화는 국내에서만 통용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에서 구매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외국내에서 통용력을 가지고 있는 외화와의 교환이 필요하게 된다. 이외국화와의 교환비율을 환율이라 한다.

(2) 우리나라의 환율

우리나라의 환율은 크게 나누어 매매기준율(=시장평균환율, 기준환율), 재정된 매매기준율, 외국환매매율(외국환은행간매매율, 외국환은행 대고객매매율)이 있으며 수출업체가 은행에 서류를 매입하거나 기타 수출입 거래에 적용하는 환율은 외국환매매율중 외국환은행 대고객매매율이다. 외국환은행 대고객매매율은 다시 대고객매매기준율, 전신환매매율, 현찰매매율, 여행자수표 매도율로 구분된다

(3) 환율 구조

외환시장에서 은행 간 거래에 의하여 외국환은행간매매율(매매기준율)이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對고객매매율을 결정한다.

※ 당일 거래된 Value Spot(자금결제일, 외환거래 또는 자금거래에서 실제 자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을 말함) 거래의 가중평균치가 다음 일자의 매매기준율이다.

① 전신환(T/T) 매매율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외환매매에 따른 환리스크 부담에 대한 보험료적 성격과 수수료를 가감하여 전신환 매매율을 결정한다.

- 이러한 전신환매매율은 다른 대고객매매율의 기준이다.
- * 對고객 전신환 매입율=매매기준율-매매 Margin(1% 정도), 은행이 수출업체로부터 매입, 송금받을 때의 환율
- * 對고객 전신환 매도율=매매기준율+매매 Margin(1% 정도), 은행이 수입업체에게 매도, 송금할 때의 환율

② 일람출급환어음매입율

환어음을 수출업체로부터 매입한 후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매입은행으로 어음대금이 입금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에 대한 금리(환가료)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공제하게 된다. 일람출급화어음매입율=전신화매입율-환가료

③ 기한부어음매입율

일람후정기출급환어음매입율=전신환매입율-환가료(일람불 환어음매입율 환가료에 환어음 기간 이자를 포함한 환가료임)

④ 현찰매매율

현찰은 그 보관비용이나 운송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그만큼 매매마진폭이 크다. 현찰매매율=매매기준율±매매 Margin(2% 정도)

※ 현물환거래의 결제일 차이에 따른 분류

Value Today: 당일 거래하고 당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Value Tomorrow: 거래일 다음 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Value Spot: 거래일 익익영업일 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2. 환리스크관리

구분	관 리 기 법	내 용
내 부 적 기 법	매 칭 (Matching)	외화자금의 흐름, 즉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통화별로 일치시킴으로써 외화 자금 흐름의 불일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 리스크를 원칙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리딩과 래깅 (Leading & Lagging)	환율변동에 대비하여 외화자금의 수입 또는 지출시기를 의도적으로 앞당기거나 (Leading) 또는 지연(Lagging)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극소화하거나 환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환노출 관리기법 의도적으로 선지급 또는 지연지급을 하므로 거래상대방과 이해관계가 상충될수도 있으며 또한 자금조달 비용에 대한 고려 필요
	네 팅 (Netting)	기업이 본사와 지사 간에 일정기간동안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서로 상계한 후 차액만을 결제함으로써 외환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환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
	가격정책 (pricing policy)	가격정책이란 수출입 상품의 가격을 수시로 조정하거나 거래통화를 조정하여 환리스크에 대응하는 기법. 즉, 환리스크를 없애기 위하여 수출입거래를 자국 통화로 하거나 또는 수출은 강세통화, 수입은 약세통화로 하는 방법
	자산/부채 관리 (Asset-Liability Management)	ALM 기법, 환율(금리) 전망에 따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의 포지션을 조정함으로써 환(금리)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법. 주로 환산 위험이나 거래적 위험을 관리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포트폴리오 전 략	Portfolio 전략, 여러 종류의 통화로 자산과 부채를 구성하여 통화간의 환율변동이 서로 상쇄되는 효과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전략

구분	관 리 기 법	내용
외 부 적 기 법	선물환거래 (Forward Transaction)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의 환율변동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외화를 장래의 일정시기(or 일정기간)에 미리 약정한 환율에 의하여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만기일에 가서 약정된 환율로 외화를 매매하는 거래, 이는 계약시점과 결제시점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는 방법
	통화스왑 (Currency Swap)	두 거래 당사자가 해당 통화(이종 통화)를 약정된 환율 따라 일정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원화를 차입한 기업과 달러를 차입한 기업이 원금을 맞교환하고 만기에 약정된 환율에 따라 서로 상환.
	외환스왑 (FX Swap)	특정통화를 현물환 거래로 매도(or 매입)함과 동시에 선물환으로 동일금액을 매입(or 매도)하여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양 통화의 금리차이에 의한 이자를 만기일의 선물환율에 반영시킴
	통화선물 (Futures)	선물환거래와 같이 장래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통화를 미래의 일정시점에 매입 또는 매도하기로 약정하는 금융선물거래의 일종. 선물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금이 필요(신용도와는 관계 없음)하며 선물환거래와는 달리 통화, 거래금액, 가격, 만기일 등이 정형화되어 있어 실수요거래와 일치시키기 어려움
	옵 션 (Option)	기초자산(Underlying Asset : 통화, 주식, 금리 등)을 장래의 특정일자 또는 일정 기간 이내에 정해진 행사가격(Strike Price)으로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 옵션의 매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권리취득의 대가로 보험료 성격을 지닌 프리미엄(Premium)을 옵션 매도자에게 지급. 반대로 옵션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대신 옵션 매입자가 옵션을 행사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매매에 응할 의무가 따름